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현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임신중절수술 측면)

1. 의의

낙태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제도상의 문제이나 각국의 형법은 일정시기를 구분하여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적정한 가족계획에 관한 사상이 널리 보급되어 의학적,우생학적 견지에서 낙태를 넓게 공인.허용됨에 따라 일반사회의 낙태에 대한 죄악감,특히 그것을 형벌로 다스려야할 정도의 죄악이라는 의식이 많이 약화되어 형법학자들도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임신시기에 관계없이 낙태를 금하고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의사의 업무상낙태는 2년이하의 징역,부동의낙태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269조) 다만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술을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중절수술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범위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혈우병,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질환으로 그질환으로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으로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나. 본인 및 배우자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 법 제2조1항의 전염병인 경우

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 된경우.

라. 법률상 혼인할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경우

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련판례

■ 판례 1

태아는 인간존엄의 헌법정신과 윤리도덕에 입각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없이 임부의 부탁만으로 낙태수술을 한것은 죄가 된다.

"모자보건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외에 편의적 임신중절 행위가 성행되는 현실에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대법원1985.6.11.선고 84도1958판결)

■ 판례 2

마취제인 에폰톨주사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 그장소에 입회하지 않아 주사액의 피하유출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의사의 과실이다.(대법원1990.5.22.선고 90도579판결)

■ 판례 3

불임수술을 받은뒤 다시 임신을 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한 의사의 수술상 잘못에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1980.5.13.선고 79다1390판결)

■ 판례 4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에 있어 의사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에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 이에 일련의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 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12.5선고94다57701판결)

■ 판례 5

불임수술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및 교육비 지급의무가 없다. 불임수술후 임신으로 아기가 태어난 경우 의사는 분만비 및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하나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출생한자에 대하여는 부양의 의무를 면할수 없음으로 손해로 볼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 (서울고법1996.10.17선고96나10449판결)

■ 판례 6

임신중절수술 환자의 자궁내용물 중에서 융모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된다(일본 고찌 지방재판소, 1976. 3. 31. 판결)